

대전시 건축관계 조례

대전시 조례 제1023호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 (목적) : 이 조례는 전축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및 전축법 시행령(이하 “령”이라 한다)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내의 전축제한 재해 위험지구내의 전축제한, 벽면 및 담장의 구조, 대지내의 조경, 건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적용범위) : 이 조례는 대전시의 도시계획 구역 재해 위험 구역 및 취락지구 내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.

제 3 조 (용어의 정의) :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“제 1 종 미판지구”라 함은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6조의 2 규정에 의거 상업지역으로서의 토지의 이용도가 극히 높은 지역에 대하여 지정한 미판지구를 말한다.
- “제 2 종 미판지구”라 함은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6조의 2 규정에 의거 상업지역으로서 토지의 이용도가 비교적 높은 구역에 대하여 지정한 미판지구를 말한다.
- “제 3 종 미판지구”라 함은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6조의 2 규정에 의거 관광에 직접 필요한 도로연변과 시가지로부터 관광지 또는 사적지에 이르는 도로연변에 지정한 미판지구를 말한다.
- “제 4 종 미판지구”라 함은 도시계획법 제16조의 2 규정에 의거 한국 고유의 건축양식을 보존하거나 주거 및 생활환경의 미관유지를 지정한 미판지구를 말한다.
- “제 5 종 미판지구”라 함은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6조의 2 규정에 의거 상업지역으로서 그 환경의 미관지구를 위하여 지정한 미판지구를 말한다.
- “최저고도지구”라 함은 도시계획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높이의 최저한도를 지정한 지구를 말한다.
- “최고고도지구”라 함은 도시계획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를 지정한 지구를 말한다.
- “제 1 종 공지지구”라 함은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지구에 적용할 건폐율을 $\frac{2}{10}$ 이내의 범위 내에서 정한 지구를 말한다.
- “제 2 종 공지지구”라 함은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지구에 적용할 건폐율 $\frac{3}{10}$ 이내의 범위에서 정한 지구를 말한다.
- “제 3 종 공지지구”라 함은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지구에 적용할 건폐율 $\frac{4}{10}$ 이내의 범위에서 정한 지구를 말한다.
- “취락지구”라 함은 국토 이용관리법 제16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거 농어민의 집단적 생활 근거지로서 개발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정한 지구를 말한다.
- “재해위험구역”이라 함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해일 고조 하천의 범람 또는 출수 기타 재해에 따른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지정한 지구를 말한다.
- “건축위원회”라 함은 법 제44조의 2의 규정에 의거령 제171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.

제 2 장 풍치 지구내의 건축제한

제 4 조 (용도제한) : 풍치 지구내에서는령 제142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 2에 계기한 건축물과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을 이를 전축할 수 없다.

- 철물, 기타 폐품류를 취급하는 고물상
- 전재상, 공구상, 철물점
- 저탄장, 야적장
- 작업소

제 5 조 (건폐율 등) : (1) 풍치 지구내의 전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$\frac{2}{10}$ 를 초과할 수 없다.

(2) 풍치지구 내의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대지 면적의 1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.

제 6 조 (대지면적의 최소한도) : 풍치지구 내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600평방미터로 한다.

제 7 조 (대지안의 공지) : 풍치지구내의 건축물은 건축선 및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거리 이상을 띠어 건축하여야 한다. 다만 담장 및 바닥면적 30평방미터 이하의 부속 건축물과 기존 건축물의 수직방향의 증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의 외벽 각 부분까지의 거리 : 4미터
-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외벽 각 부분까지의 거리 : 2미터

제 8 조 (용적율) : 풍치 지구내에 전축하는 건축물의 용적율은 60%를 초과할 수 없다.

제 9 조 (건축물의 높이) : 풍치 지구내에 전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20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.

제 3 장 미관 지구내의 건축제한

제 10 조 (건축심의) : (1) 시장은 미판지구내의 건축물을 건축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모양과 색체에 관하여 미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(2)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심의의 절차 기준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.

제 11 조 (용도제한) : (1) 제 1 종 미판지구 내에서는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을 이를 전축할 수 없다.

- 농수산물 도매시장, 시장
- 철물, 기타 폐품류를 취급하는 고물상
- 전재상, 공구상, 철물점
- 창고, 저탄장, 야적장
- 작업소
- 전염병원, 정신병원, 마약진료소
- 정육점, 세탁소
- 장의 관련 시설
- 자동차 관련시설

10. 단독주택(공판을 제외한다), 공동주택

(2) 제 2 종 미판지구에서는 제 1 항 제 1 호 내지 제 9 호에 계기한 건축물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을 이를 전축할 수

없다.

(3) 제 3 종 미판지구내에서는 제 1 항 제 1 호 내지 제 8 호에 계기한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.

(4) 제 4 종 미판지구내에서는 제 1 항 제 1 호 내지 제 6 호에, 계기한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.

(5) 제 5 종 미판지구내에서는 제 1 항 제 1 호 내지 제 5 호에 계기한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.

제 12 조 (대지면적의 최소한도) : 미판지구내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면적으로 한다.

1. 제 1 종 미판지구 : 600 m^2
2. 제 2 종 미판지구 : 400 m^2
3. 제 3 종 미판지구 : 400 m^2
4. 제 4 종 미판지구 : 300 m^2
5. 제 5 종 미판지구 : 400 m^2

제 13 조 (대지안의 공지) : 미판지구내의 건축물은 주전면 도로측의 건축선으로부터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거리 이상을 뛰어 건축하여야 한다. 다만 담장 및 바닥면적 30평방미터 이하의 부속 건축물과 기존 건축물의 수직방향의 증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구 분	건축선으로부터 외벽 각 부분까지의 거리
1. 제 3 종 미판지구	2 미터
2. 제 4 종 미판지구	2 미터

제 14 조 (건축물의 높이) : 미판지구내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층수는 2층 이상으로 한다.

제 15 조 (건축물의 규모) : (1) 미판지구내에 건축하는 건축물(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은 제외한다)은 다음표에 계기하는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. 다만 인접하여 기존 건축물 또는 도로 등이 있어 부득이한 경우로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 미판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구 분	건축물의 앞면길이	건축물의 옆면길이
제 1 종 미판지구	14m	12m
제 2 종 미판지구	12m	10m
제 3 종 미판지구	12m	10m
제 4 종 미판지구		
제 5 종 미판지구	12m	10m

(2) 제 1 종 내지 제 3 종 및 제 5 종 미판지구내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축 면적은 층의 수에 따라 다음표에 계기하는 면적 이상이여야 한다. 다만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총 의 수	건 축 면 적
3 층 이하	100 m^2
4 ~ 10 층	200 m^2
11 ~ 15 층	400 m^2
15 층 이상	800 m^2

제 16 조 (건축물의 모양) : 시장은 미판지구내에서 그 지구의 미판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양식, 구조 형태 등을 제한할 수 있다.

제 17 조 (건축물의 부수 시설 등) : (1) 미판지구내에서는 세탁물 건조대, 장독대, 철조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

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.

(2) 미판지구내에서는 굴뚝 환기설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.

(3) 시장은 미판지구내에서 그 지구의 미판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건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개축 또는 철거를 명할 수 있다.

제 4 장 고도 지구내의 건축제한

제 18 조 (최저 고도지구내의 건축제한) : 최저 고도 지구내의 건축하는 건폐율, 용적율 및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다음호에 계기하는 범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.

구 分	건폐율	용적율	대지 최소면적
높이의 최저한도를 10미터 미만의 범위내에서 지정한 지구	$\frac{4}{10}$	100%	300 m^2
최저높이 10~20m 이하의 범위내에서 지정한 지구	$\frac{5}{10}$	200%	600 m^2

제 19 조 (최고 고도 지구내에 건축제한) : 최고 고도지구내에 건축하는 건폐율 및 용적율은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 10미터 이내에서 지정한 최고 고도지구내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건폐율 : $\frac{5}{10}$
2. 용적율 : 800%

제 5 장 교육 및 연구지구내의 건축제한

제 20 조 (용도제한) : 교육 및 연구지구내에서는 형 제 147조 제 1 호 내지 제 7 호에 계기하는 건축물과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.

1. 장의 관련시설
2. 전염, 정신병원, 마약진료소
3. 자동차 관련시설
4. 저탄장, 야적장
5. 정육점, 전당포
6. 교정시설

제 6 장 업무지구내의 건축제한

제 21 조 (용도제한) : 업무지구내에서는 형 제 148조 제 1 항 제 1 호 및 제 2 호에 계기한 건축물과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.

1. 전염, 정신병원, 마약진료소
2. 저탄장, 야적장
3. 전재, 공구상, 철물점
4. 작업소
5. 종교시설
6. 단독주택(공단제외), 공동주택
7. 운동시설
8. 교정시설

제 22 조 (특정 업무 지구내의 용도제한) : 형 제 148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업무의 환경정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로 지정 공고한 업무지구내에서는 제 21조에 계기한 건축물과 노유자시설 자동차 관련시설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.

제 7 장 공지지구내의 건축제한

제 23 조 (전폐율) : 공지지구내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폐율은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.

1. 제 1종 공지지구 : $\frac{2}{10}$
2. 제 2종 공지지구 : $\frac{3}{10}$
3. 제 3종 공지지구 : $\frac{4}{10}$

제 24 조 (대지면적의 최소한도) : 공지 지구내의 대지 면적의 최소한도는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면적으로 한다.

1. 제 1종 공지지구 : 600m^2
2. 제 2종 공지지구 : 400m^2
3. 제 3종 공지지구 : 300m^2

제 25 조 (대지안의 공지) : 제 1종 공지지구내의 건축물은 주된 도로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거리 이상을 뛰어 건축하여야 한다. 다만 담장 및 바닥면적 30평방미터 이하의 부속건축물과 기존 건축물의 수직방향의 중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건축선으로부터 외벽 각부분까지의 거리 : 6 m
2.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외벽 각부분까지의 거리 : 4 m

제 8 장 공항지구내의 건축제한

제 26 조 (용도제한) : 공항지구내에서는 령 제154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다음 각호에 계기한 건축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.

1. 발전소
2. 제련소
3. 요업공장, 화학공장

제 27 조 (건축물의 높이) : 시장은 항공기의 이착륙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높이 이상의 건축물의 건축을 제한할 수 있다.

제 9 장 아파트지구내의 건축제한

제 28 조 (대지면적의 최소한도) : 아파트지구내의 대지 면적의 최소한도는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면적으로 한다.

1. 공동주택 : $1,500\text{m}^2$ 이상
2. 기타 건축물 : 300m^2 이상

제 29 조 (전폐율) : 아파트 지구내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폐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.

1. 공동주택 : $\frac{4}{10}$
2. 기타 건축물 : $\frac{5}{10}$

제 30 조 (용적률) : 아파트 지구내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용적률은 300%를 초과할 수 없다.

제 31 조 (인동거리) : (1) 아파트 지구내 동일 대지안에 건축하는 공동주택간의 인동거리는 각 건축물 높이의 1.5배 상당하는 거리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.

(2) 아파트 지구내의 공동주택은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 높이의 $\frac{5}{10}$ 배에 상당하는 거리 이상을 뛰어 건축하여야 한다.

제 32 조 (건축물의 모양) : (1) 시장은 아파트 지구내에서 그 지구의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모양, 색체 등을 제한할 수 있다.

(2) 시장은 아파트 지구내의 건축물로서 주거환경상 현저히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개축 또는 대수선을 명할 수 있다.

제 10 장 취락지구내의 건축제한

제 33 조 (용도제한) : 취락지구내에서는 령 제157조의 2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.

1. 위락시설
2. 교정시설
3. 자동차 관련시설
4. 장의 관련시설
5. 도축장

제 11 장 재해위험 지구내의 건축제한

제 34 조 (건축제한) : 재해위험 구역 내에서는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건축물 기타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이 아니면 이를 건축할 수 없다.

1. 자동차 관련시설
2. 동물 관련시설
3. 근린운동시설, 운동시설
4. 흥행, 전담회, 공사용 가설 건축물,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존치 기간 6개월 이내 가설 건물

제 12 장 벽면 및 담장의 구조

제 35 조 (벽면의 위치) : 건축법 시행령 제14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중 도로에 면한 1층의 벽면의 위치를 건축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 뛰어 건축하여야 한다. 다만 법 제30조 제 2항 또는 령 제168조의 2 제 1항의 규정에 적용을 받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 36 조 (담장의 구조) : (1) 도시계획 구역내에서는 담장에 철조망, 유리파편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.

(2) 도시계획 구역내의 미관지구 내에서 담장의 높이 및 구조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.

제 37 조 (담장 및 벽면의 색체) : 시장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구역내의 건축물의 벽면 및 담장의 색체를 제한할 수 있다.

제 38 조 (지붕의 구조 및 색체) : 시장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계획 구역내의 건축물의 지붕의 구조 및 색체를 제한할 수 있다.

제 13 장 대지안의 조경

제 39 조 (대지안의 조경) : 령 제168조의 3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내의 식수 등 조경은 다음 표에 계기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. 다만 교목의 경우 식수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수고 2미터 이상의 교목을 60%이상 식수하여야 한다.

구 분	식수밀도(제곱미터)	상록비율(%)
관 목	0.4본 이상	
교 목	0.3본 이상	상록수 : 40% 낙엽수 : 40%

제 40 조 (조경사업비의 예치) : 령 제168조의 3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가 시장에게 예치하여야 하는 조경 공사비는 건축사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조경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이 조경예정 시기에 시공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비 내역서 상의 금액으로 한다.

제 14 장 건축 위원회

제 41 조 (기능) : 건축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칭한다)는 령

제171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심의조사 또는 전의한다.

제 42 조 (조직) : (1) 위원회는 위원장,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(2)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(3)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기간으로 한다.

제 43 조 (위원장 등의 직무) : (1)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.

(2)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장 유고시에 직무를 대행한다.

(3) 위원장, 부위원장이 모두 유고시에는 시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 44 조 (회의) : (1)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.

(2)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.

제 45 조 (소위원회) : (1)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(2) 소위원회는 책임위원을 두고 소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게 한다.

(3)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회원 중에서 호선하는 3인 이상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(4) 소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중 위원회가 소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견으로 가름하기로 한 때에는 소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가름할 수 있다.

(5) 소위원회는 전원 출석으로 개최하고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46 조 (전문위원) : (1) 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 또는 연구를 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 약간인을 둘 수 있다.

(2) 전문 위원은 건축 및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위원장의 재청으로 시장이 임명한다.

(3) 전문 위원은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
제 47 조 (간사 및 서기) : (1)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.

(2) 간사는 주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주무과 전속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.

제 48 조 (회의록의 비치 및 보고) : (1)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.

(2) 위원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 49 조 (자료제출의 요구등) : (1)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 소속하의 공무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, 출석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.

(2) 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 관계 공무원의 합동조사반을 구성할 수 있다.

제 50 조 (수당) : 공무원이 아닌 위원, 전문위원과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청된 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.

제 51 조 ((비밀준수) : 위원회 위원, 전문위원, 간사 및 서기 와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계한자는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: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다만 제10조 단서, 제15조 제1항 단서, 제17조 제3항 및 제32조 제2항의 규정은 위원회가 설치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(2) (폐지조례) : 대전시 조례 제727호 미판지구 조례, 조례 제703호 대전시 건축위원회 설치조례, 조례 제728호 교육 및 연구지구 조례 제360호 풍치지구 건축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(3) (경과조치) :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.

(4) (경과조치) : 이 조례 시행 당시 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기존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는 형 제180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

50세대 미만 아파트(연립주택) 건설지침

개정 1980. 5. 9.

1. 목적 :

- 1) 아파트(연립주택)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공동주택으로서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,
- 2) 인근주거의 보호와 아파트(연립주택)의 질적향상등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함에 있음.

2. 규제범위 :

- 1) 대지의 규모
 - 150평(495평방미터) 이상
 - 단 10세대 이상에 한하여 적용

- 2) 대지의 인접도로 : 6 미터 이상

- 3) 전폐율 : 50% 이내(단, 고도지구내에서는 60% 이내)

- 4) 층축제한 : 5층 이하

5) 건축물의 구조

- 세대간 간벽은 공간쌓기에 방음시설을 한다.
- 벽체의 두께 : 19센티 이상
- 외벽의 창문 : 2중창(단 부속건물은 제외)
- 최상층의 천정 : 방열시설
- 지붕 : 2층 이하는 콘크리트 박공지붕위 후형스레트 기와 지정색 페인트칠(구배 1/10 이상)

단, 3층 이상은 예외로 한다.

6) 건축물의 배치

- 2층 이하는 전면 건축선에서 건축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2미터 이상 후퇴

- 3층 이상은 전면 건축선에서 건축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3미터 이상 후퇴

- 단, 측면은 2미터 이상 후퇴(4면이 폐쇄되어서는 안 됨)

7) 단지내의 도로

- 출입도 6미터 이상

- 단지내의 도로는 포장하여야 한다.

8) 어린이 놀이터

- 기준면적(10세대 기준) : 49.5평방미터(15평) 이상

- 1세대 초파량 : 3.3평방미터(1평) 이상 비율로 가산

- 필수시설 : 그네, 미끄럼틀, 철봉, 시소, 모래판 등 1개 이상

- 9) 배수시설

 - 1층 세대수에 해당하는 맨홀을 설치하고 토판으로 배수관 설치

10) 조경

 - 공지면적의 1/10이상 식수
 - 장소선정: 생육 가능지
 - 담장: 도로변은 투시형 담장

11) 오물 수거 시설

 - 세대별 설치
 - 맨홀 설치시 위치: 다스트슈트 하단
깊이: 1미터 이하
수거구: 수거에 편리하게 설치 단, 1층 바닥이 지반보다 1미터 이상 높을시는 예외

12) 보안등 설치: 대지사면에 1개소씩 설치(200와트 이상 수은등)

13) 부설공사의 예방

 - 공사감리자 공정보고 월 1회 제출(익월 5일까지)
 - 시공기사 현장 대리 상주 배치
 - 건축직 공무원 현장확인

3. 기타

 - 본 지침에 규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전축법 주택건설 촉진법, 기타 법률과 대전시 건축조례 규정에 의하고 단, 대전시 관내 환경 기타 지형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.
 - 본 지침은 10세대 이상 아파트(연립주택)에 적용한다.

4. 적용일시

 - 본 지침 발표 후 1개월 경과 후 시행한다.

會員作品 原稿作成要領

※ 본지에 게재된 귀하의 設計作品은 본지와 더불어 永久保存되는 귀중한 資料가 되며, 또한 본지에 게재된 作品만이 자동적으로 本協會 建築賞의 候補作品이 됩니다.

(1) 구비도서 및 작성요령

① 図面

配置図： 대지가 소규모인 때는 평면도에 겹친다. 대규모인 경우는 별도 작성(인쇄 크기의 2배 정도 크기)
 平面図： 1 층평면 · 기준층평면 일반적인 경우, 각층평면(지하층포함) 특수한 경우에 추가.

단면구조 : 주요 구조단면 단순한 경우는 생략

② 作成要領

- 백지(트레싱지 또는 켄트지)에 검정색으로 잉킹한다. 소규모 건축물에서의 모자이크 타일선 등과 같은 섬세한 부분은 생략 연필선은 지움.
 - 室名과 縮尺표시는 연필로 기입한다.
 - 방위 표시는 잉킹한다.
 - 平面図, 断面図의 縮尺은 다음을 기준으로 작성함.

{ 소규모(주택 등)	$1/50 \sim 1/100$
{ 중규모.....	$1/100 \sim 1/200$
{ 대규모.....	$1/200 \sim 1/500$

(2) 写真

作品写真：全景、内部、詳細 各 2~3枚

(흑백) : 전경写真是 촬영 불가능한 특수사정이 경우에 한하여 透視圖로 대신 할 수 있다.

設計者写真：자연스러운 포-즈로 한다. 사진 뒷면에는 그 성명을 명기함.

(3) 建築物概要 及 設計說明

建筑物 概要：① 建筑物名：

② 所 在 地 :

③ 設計者：担当 / 事務所名 별도 기입

④ 施工者：

⑤ 规模：基地面積 / 建築面積 / 基準層面積 / 延面積 / 地上層數 / 地下層數 / 層高이 / 建築物高이
기타 施設規模(例·病床数, 客室数, 座席数等)

⑥ 構 造：主体構造 / 柱스탠드

⑦ 設備 : 난방, 空調 /衛生 /電氣 기타

설계설명 : 계획과정과 계획방침 특기사항을 간결하게 설명한다. 200자 × 2 ~ 4장

자세한 내용은 本協会出版事業部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.. TEL. 73-9491~2